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7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1월 17일

나. 제안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3. 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 제안이유

계절이나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이용대상, 이용료, 이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

다. 이용자 이용수칙 (안 제6조~제8조)

-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

라.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안 제9조)

마. 위탁운영,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11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4)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1조

5)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22)

나. 예산조치: 붙임 비용추계서 참고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1. 9. ~ 11. 29.)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개선의견 수용

- 이용료 감면 기준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일부에서 전부로 확대¹⁾

구분	원 안	개선안(법령 수정안)
내용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2항 관련)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2항 관련)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계절이나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

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2022. 11. 22.)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2022년 본격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시설 등도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을 기준으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신설하였음.
-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감면대상자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라고 명시하고 있음. 양육비 및 전반적인 돌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함.

- 이용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 안 제3조는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대상과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9조는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진행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계절적 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경제적 부담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아동의 놀이권²⁾을 확보하고자 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사업에 따라, 우리 구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현재 우리 구에는 민간 실내어린이놀이시설³⁾ 2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제2차 공간선정 심의를 통해 설치비 [210,000천원]와 물품구입비[100,000천원] 등이 확보되어 129m² 규모로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저렴한 비용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향후 4년간 총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기존 공간의 사용계획 변경이나 기부채납 시 유희공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공공형 시설인 만큼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정성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식음료를 판매,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4) 비용(1회, 2시간 기준): 영유아 2,000원, 보호자 1,000원

참고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따른 공간설치비, 물품구입비, 운영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산정근거: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계획(서울시 가족담당관-24864, 2022. 5. 2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출	설치비	240,000	450,000	450,000			1,140,000
	물품구입비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운영비		88,800	133,200	133,200	133,200	488,400
	인건비		201,042	335,070	335,070	335,070	1,206,252
	소계(b)	340,000	839,842	1,018,270	468,270	468,270	3,134,652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분		산출내용	금액(천원)
총계			3,134,652
설치비	m ² 당 1,500천원	- 2022년 160m ² : 240,000천원 - 2023년 300m ² : 450,000천원 - 2024년 300m ² : 450,000천원	1,140,000
물품구입비	최대 100,000천원	- 1개소 당 1억원, 3개소 조성 총 3억원	300,000
운영비	월 3,700천원	- 2023년 2개소, 2024년 이후 3개소 운영비용 - 1개소 1년 운영비: 3,700천원 × 12개월 = 44,400천원	488,400
인건비	2023년 생활임금 11,157원	- 2023년 2개소 6명, 2024년 이후 3개소 10명 (아동 10명 이용시 1명 필요) - 서울시 생활임금 반영 33,507천원(1인/1년)	1,206,252

5. 자원조달 방안

1) 자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비고
자체수입	구비	-	201,042	335,070	335,070	335,070	
이전재원	시비보조금	340,000	638,800	683,200	133,200	133,200	
합계		340,000	839,842	1,018,270	468,270	468,270	

6. 작성자: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 과장 김옥단

(담당: 행정7급 박성근 / ☎ 2600-6756)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22.>

어린이놀이시설 (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